

착한신고 112

아이는 기다립니다. 당신이 용기내 주기를...

아동학대란?

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·정신적·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

아동이란?

만 18세 미만(즉, 고등학생도 포함)



용기 내 신고해 주세요

■ 아동학대를 의심해 주세요!

구분	신체적 징후	행동적 징후
신체학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설명하기 어려운 상흔사용된 도구의 모양이 그대로 나타나는 상처담뱃불 자국, 뜨거운 물에 잠겨 생긴 화상자국겨드랑이 팔뚝 안쪽, 허벅지 안쪽 등 다치기 어려운 부위의 상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어른과의 접촉회피다른 아동이 올 때 공포를 나타냄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양육자에 대한 두려움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
정서학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발달지연 및 성장장애신체발달 저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특정물건을 계속 뺏고 있거나 물어뜯음파괴적 행동장애신경성 기질 장애 (놀이장애)
성학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성병 감염생식기의 이상 징후항문의 손상입천장의 손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성적행동이나 성적묘사 그림타 아동과 성적인 상호관계혼자 남아 있기를 거부 또는 외톨이자기 파괴적이거나 위험을 무릅쓰는 모험적 행동
방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비위생적인 신체상태의학적 치료 불이행으로 인한 건강상태 불량발달지연 및 성장장애교육수준이 다른 아동에 비해 미달미취학 무단결석 방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계절에 맞지 않는 부적절한 옷차림음식을 구걸하거나 흥침도벽 또는 불안정감학교에 가고 싶어 하나 보호자의 교육의지 미약

■ 아동학대 징후를 발견하면...

- 112로 신고하여 아동의 인적사항, 학대행위자로 의심되는 사람의 인적사항, 아동이 위험에 처해 있거나 학대를 받고 있다고 믿는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.
- 스마트앱 '목격자를 찾습니다'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.
 - 앱 스토어에서 '목격자를 찾습니다' 검색
⇒ 다운로드 받아 설치
 - 앱 실행하신 뒤 설명인증 및 가입해주세요.
 - '아동학대 제보' 클릭하여 신고해주세요.

■ 신고 후 신원노출이 두려운가요?

신고자의 신분은 철저히 보장되며 오인신고인 경우에도 무고의 목적과 고의가 없다면 처벌되지 않습니다. 신고자는 수사과정에서 인적사항을 진술조사에 기재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. 또한 '16.1.25.부터 「공익신고자등 보호법」이 개정·시행되어 신고자에게 불이익처우를 한 자는 처벌을 받게되며, 신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구조금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.